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4.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4. 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개정위원회(1999. 4.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지역경제과장 정진환)

가. 제안이유

○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기준을 현행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 처분근거 법령 변경(안 제3조제1항 별표)

• 고법 제11조제2항 → 고법 제11조제4항

• 액법 제35조제2항 → 액법 제35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관련사항 삭제(안 제3조제1항 별표)

•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관한 시공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처분함.

○ 가스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지역 외의 지역에 공급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규제 완화를 위하여 삭제되었기 관련사항 삭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지역제한을 해제하였는데 범위가 경기도 내 입니까?	○ 전국 어디에나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 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25 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제출년월일 : 1999. 4.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기준을 현행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의안전및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가스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
고자 함.

□ 주요골자

○ 과태료 처분근거법령 변경(안 제3조제1항 별표)

• 고법 제11조제2항 → 고법 제11조제4항

- 액법 제35조제2항 → 액법 제35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관련사항 삭제(안 제3조제1항 별표)
 -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관한 시공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처분함.
- 가스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지역 외의 지역에 공급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규제완화를 위하여 삭제되었기 관련사항 삭제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별표중 제1호 나목의 관련법규 "고법 제11조제2항" 및 "액법 제10조제2항"을 각각 "고법 제11조제4항" 및 "액법 제10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의 관련법규 "고법 제11조제4항" 및 "액법 제10조제4항"을 "고법 제11조제5항" 및 "액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별표중 제5호·제7호·제8호 가목 및 제15호중 "동자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하고, 제14호가목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별표중 제7호 가목의 관련법규 "액법 제13조제4항"을 "액법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제10호가목중 "액법 제35조제2항"을 "액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별표중 제11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을 본문으로 한다.

제3조제1항별표중 제12호 위반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의 관련법규 "액법 제19조제6항"을 "액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12. 가스공급의무

가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 분 내 용			부과 권자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 분 내 용			부과 권자
		1회	2회	3회이상				1회	2회	3회이상	
나. 충전대장 또는 판매대장을 작성하여 동자부령에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때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사용신고 등											
가. 가스사용자가 동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10. 보고, 검사 등											
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등에 위반한 때	고법 제26조제1항 액법 제35조제2항					(현행과 같음)					
나.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시공자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동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공기록 및 배관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1.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 분 내 용			부과 권자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처 분 내 용			부과 권자
		1회	2회	3회이상				1회	2회	3회이상	
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관한 시공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나. (생략)	액법 제19조제6항 도법 제16조제2항	50만원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2. 가스공급 의무 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공급지역 안에 있는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허가받은 공급지역외의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3.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2. 가스공급 의무 가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였을 때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 판매의 제한 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가스공급방법에 어긋날 때 나. (생략)	액법 제19조제6항 도법 제16조제2항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3.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5. 시공기록 등의 보존						14. 판매의 제한 가. 산업자원부장관 나. (현행과 같음)	액법 제19조제2항	(현행과 같음)			